2026. 10.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승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 - 107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오승경, 손정애, 정경원 의원(3명)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 시민 및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다.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아.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차.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여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관련 법령 발췌서

라.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마. 타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조례 현황

사. 타 시·군 조례 예시

아. 김제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자. 전북특별자치도내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김제시에서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1. “동물보호센터”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및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생명존중 의식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와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및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시민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의 정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질병 예방 및 치료,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행사
2. 반려동물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확충
3.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보호·관리 지원
4. 동물등록 및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동물보호센터) ① 시장은 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인력 기준 및 법령과 지정조건의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가 법령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유실 · 유기동물의 보호)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과 홍보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길고양이 관리) ①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안내 및 홍보
3. 길고양이 관련 주민 갈등의 예방 및 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동물병원,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동물학대 예방) 시장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동물보호와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동물보호센터)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1) 추계기간 : 2026. 1. ~ 2030. 12.

2) 지원경비 : 인건비(3명), 기타보상금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지원금액	1,770,366	346,000	351,500	354,500	357,600	360,766
인 건 비	600,366	100,000	120,500	123,500	126,600	129,766
기타보상금	1,155,000	231,000	231,000	231,000	231,000	231,000
시설비	15,000	15,00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재원 및 자체재원(시비) 마련

3. 작성자 : 동물보호팀장 이상곤

축산진흥과장 이 상 헌

□ 관련 법령 발췌서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 · 유기동물”이란 도로 ·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 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 · 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 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 · 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 · 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 ·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 ·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 · 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 ·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오승경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2. ~ 2026. 9. 28.(6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오덕록**	김제도시전문위원	**김희성**	의회사무국장	전결 2026. 9. 30. **이영석**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5208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의회 3층 정책지원팀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2764 팩스번호 063-540-2777 / law818@korea.kr / 부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타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

오승경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6. 9. 22. ~ 2026. 9. 28.(6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5071(2026. 9. 22.)호로 공문 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오덕록	경제도시전문위원	김희성	★의회사무국 전결 2026. 9. 30. 장	이영석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5210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의회 3층 정책지원팀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2764 팩스번호 063-540-2777 / law818@korea.kr / 부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조례 현황

(2026. 9. 30.현재)

구분	제정현황		비고
	여	부	
전북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2. 11. 2.)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2019. 8. 9.)
전주시	○		전주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2018. 12. 28.)
군산시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2020. 9. 29.)
익산시	○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2019. 11. 26.)
정읍시	○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2024. 2. 2.)
김제시		○	
남원시	○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21. 3. 26.)
완주군	○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2021. 12. 30.)
진안군	○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2020. 6. 15.)
무주군		○	
장수군	○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2025. 11. 20.)
임실군	○		임실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23. 8. 9.)
순창군	○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2025. 10. 15.)
고창군		○	
부안군	○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2023. 4. 21.)

□ 타 시·군 조례 예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06.14 조례 제3545호
(일부개정)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전부개정) 2025.03.11 조례 제46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과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된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체외 부착형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 방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 시행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원시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끝난 후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

센터 운영자가 위촉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르고,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물의 포획) ①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할 때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되면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할 때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때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때에는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의 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2. 동물보호 후원자, 동물보호센터·반려동물센터 직원 및 동물관련 단체원,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피학대동물 보호·관리 및 보호비용의 청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고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보호비용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해당 단체에 보호동물을 우선하여 분양한다.

③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동물의 보호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때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사 등에게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는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할 때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때는 청구 내용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보호비용을 징수할 때의 징수 절차는 시장의 보호비용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내 동물병원 등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16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복지, 입양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 및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2025.03.11. 조례 제4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　　제정) 2023.04.21 조례 제2757호
(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15호
(일부개정) 2025.03.10 조례 제29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부안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동물복지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동물복지 및 복지를 위한 부안군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 ·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 관리)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10.>

제8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의 상당액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개정 2025. 3. 10.>

④ 군수는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중성화사업 등) ①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를 적정한 개체 수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희망하는 군내 동물병원과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김제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 일반현황

- 운영기관 : 김제시[(전북말산업복합센터(위탁)]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
- 위　　치 : 김제시 용지면 금백로 571-39
- 시설규모 : 보호시설(307.2㎡)
- 인력현황 : 9명(수의사1명, 포획4명, 관리3명, 사무실1명)
- 보호두수 : 약 195두(개195)

❍ 운영현황

- 유기동물 입소현황

연도별	마 리 수				
	합 계	개	고양이	기타	비고(전북/전국)
2025	478	475	3	0	
2024	560	550	10	0	8,795/106,852

- 유기동물 처리실적(2025. 12.말 기준)

처 리 실 적(마리)						
합계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311	25	44	130	112	0	0

※ 연간 구조 마리수: 약 500두

〈 지 원 내 역〉

<'26년 유기동물 보호구조사업 / 3개사업 117백만원(국 5, 도 34, 시 78)>

○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국) : 17백만원 / 구조·치료 비용 등

○ 동물보호 및 구조장비 지원(도) : 100백만원 / 보호관리, 동물등록, 구조장비, 인도적 처리 등

○ 보호센터 운영비(시) : 9명 / 196백만원 / 인건비 등 센터 운영비

○ 유기동물 포획단 환경개선사업(시) : 15백만원 / 근무자 휴게 컨테이너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내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

❍ 시·군별 동물보호센터 현황

운영방법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25	10	1	1	1	3	1	1	1	1	1	1	1	1	1
직영	7				1			1	1	1	1	1	1		
위탁	18	8	1	1		3	1							1	1
병원	14	10				3								1	
법인	4		1	1			1								1

❍ 시·군별 동물보호센터 세부 현황

시군	운영방식	동물보호센터명	소 재 지	수용규모
23개소 (직영 7 - 정읍,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 위탁 16 - 동물병원 12, 법인단체 4)				
전주(8)	병원위탁	사랑플러스동물병원	덕진구 쪽구름 2길 8	8
	병원위탁	행복한동물병원	덕진구 건산로 243	22
	병원위탁	동부동물병원	완산구 기린대로 139	22
	병원위탁	프렌즈동물병원	완산구 거마평로 86	33
	병원위탁	효자동물병원	완산구 백제대로 121	21
	병원위탁	박영재동물병원	완산구 전주천서로 111	21
	병원위탁	링크늘푸른동물병원	완산구 서원로 225	38
군산	병원위탁	데이지동물병원	완산구 용리로 47	15
익산	법인위탁	(사)리턴	보덕안정길 108-20	300
	법인위탁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삼기면 황금로 342-17	250
정읍	직영	정읍시동물보호소	하북동 41-1	150
남원(3)	병원위탁	청원동물병원	(동)용성로 95	10
	병원위탁	하나동물병원	(동)왕정동 남문로 403	20
	병원위탁	인월동물병원	인월면 인월로 64	20
김제	**법인위탁**	**전북말산업복합센터**	**용지면 금백로 571-39**	**100**
완주	직영	완주군 동물보호센터	화산면 누하길 127	130
진안	직영	진안군 유기동물보호소	진안읍 예리길 36	50
무주	직영	무주군 동몰보호센터	적상면 구억로 110-27	10
장수	직영	장수군 동물보호소	천천면 승마1로 152	60
임실	직영	임실군 동물보호센터	오수면 금암리 863-16	110
순창	직영	순창군 유기견 임시보호소	구림면 삭골길 56-1	30
고창	병원위탁	더나은동물병원	(동)고창읍 모양성로 75	34
부안	단체위탁	부안펫	주산면 주산로 369	300